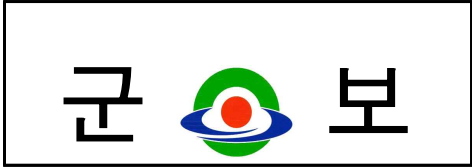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37호 2024. 6. 13.(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예천군 공고 제2024-1036호)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예천군 공고 제2024-1036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 5. 17.)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으로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 일괄 정비
 -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연 번	부 서	조 례 명
1	기획예산실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조)
2	재무과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안 제2조)
3	종합민원과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4	문화관광과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5	환경관리과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5조)
6	도시과	예천군 군계획 조례(안 제6조)
7	건축과	예천군 경관 조례(안 제7조)
8	건축과	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8조)
9	안전재난과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조)
10	안전재난과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제10조)
11	보건소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5월 중 추진 예정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8호다목의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 공사(국가유산과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3조(「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예

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문화재위원·전문”을 “문화유산위원·전문”으로 한다.

제43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6조(「예천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완화)”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예천군 경관 조례」의 개정) 예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나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안내시설물의 종류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재난관리 주관기관란 중 “18. 문화재청”을 “18. 국가유산청”

으로 하고,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가. 문화재 시설 사고”를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로 한다.

제11조(「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u>조</u> <u>건</u> 1.~7. (생 략) 8.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다. <u>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u> 및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라.~마. (생 략) 9.~12. (생 략)	[별지 제4호서식] <u>조</u> <u>건</u> 1.~7. (현행과 같음) 8.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국가유산 공사(국가유산과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u> ----- ----- ----- ----- ----- 라.~마. (현행과 같음) 9.~12. (현행과 같음)

제2조(「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u>문화재로</u>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조(<u>국가유산에 대한 감면</u>) ①- ----- ----- <u>국가유산으로</u> ----- ----- ----- -----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예천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예 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 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	5. ----- -----

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 시 6. (생략)	----- <u>국가유산</u> ----- -- 6. (현행과 같음)
--	---

제4조(「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3조(유물감정위원) ① 군수는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하며, 각 호의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u>문화재보호법</u>」 제8조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6조」에 따른 <u>문화재위원·전문가</u> 2.·3. (생략) ② (생략) 제4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u>문화재보호법</u>」,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유물감정위원) ① ----- ----- ----- -----. 1.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제8조 ----- ----- <u>문화유산위원·전문</u>-----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준용) ----- ----- -----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 -----.

제5조(「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제한거리</th></tr> <tr> <td>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td><td>·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 이내 지역</td></tr> </table>	구분	제한거리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 이내 지역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제한거리</th></tr> <tr> <td>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td><td>·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 이내 지역</td></tr> </table>	구분	제한거리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 이내 지역
구분	제한거리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 이내 지역								
구분	제한거리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 이내 지역								

제6조(「예천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물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생략)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3. (생략)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제63조(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완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 ----- ----- -----.

제7조(「예천군 경관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3조(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사업)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 (생략)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가. (생략) 나. 국가, 도 및 군의 <u>지정문</u>	제23조(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사업)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u>지정문</u>

<u>화재</u> 다.·라. (생 략) 제24조(심의대상 건축물)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2.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3.·4. (생 략)	<u>화유산</u> 다.·라.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의대상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 3.·4. (현행과 같음)
--	--

제8조(「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별표]			개 정 안		
현			행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1. 검토대상 : 공공시설물 등			1. 검토대상 : 공공시설물 등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안내시설물	도로 및 건물/주차장		안내시설물	-----	
	/공공기관/자전거도			-----	
	로/보행 관련 방향			-----	
	등 안내, 공원/관광/			-----	
	문화재 안내, 영상정			국가유산 -----	
	보 관련 환경정보 표			-----	
	지, 디지털 영상매체,			-----	
	지정 벽보판(광고판),			-----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 ----- ----- -----	
--	--	--	--	----------------------------------	--

제9조(「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 화재, 붕괴 5. ~ 8. (생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국가유산</u> ----- ----- 5.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별표 2] <u>재난수습 주관부서</u>(제4조제2항 관련) <table><tr><th>재난관리 주관기관</th><th>재난 및 사고의 유형</th><th>주관부서</th></tr><tr><td>18 문화재청</td><td>가. 문화재 시설 사고</td><td>문화관광과</td></tr></table>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별표 2] <u>재난수습 주관부서</u>(제4조제2항 관련) <table><tr><th>재난관리 주관기관</th><th>재난 및 사고의 유형</th><th>주관부서</th></tr><tr><td>18 국가유산청</td><td>가. 국가유산시설사고</td><td>문화관광과</td></tr></table>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8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시설사고	문화관광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8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시설사고	문화관광과											

제11조(「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례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의 활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

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2.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

화유산

-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자연유산의 활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 5. 17.)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으로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 일괄 정비
－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연 번	부 서	조 례 명
1	행정지원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1조)
2	행정지원실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3	문화관광과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3조)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5월 중 추진 예정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학예연구 학예일반 연구관·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6의 제2호가목 시설 건축 5급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2조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강사 수당 기준 A급 및 B급 기준란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재 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제15조제4항, 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table><tr><td>직렬</td><td>직류</td><td>연구관·연구사</td></tr><tr><td>학예연구</td><td>학예일반</td><td>문화재관리학</td></tr></table>	직렬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재관리학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제15조제4항, 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_관련) <table><tr><td>직렬</td><td>직류</td><td>연구관·연구사</td></tr><tr><td>학예연구</td><td>학예일반</td><td>국가유산관리학</td></tr></table>	직렬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가유산관리학
직렬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재관리학											
직렬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가유산관리학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 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 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 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table><tr><td>직렬</td><td>직류</td><td>5급, 6급,7급, 8급, 9급</td></tr><tr><td>시설</td><td>건축</td><td>문화재수리기술자</td></tr></table>	직렬	직류	5급, 6급,7급, 8급, 9급	시설	건축	문화재수리기술자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 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 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 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table><tr><td>직렬</td><td>직류</td><td>5급, 6급,7급, 8급, 9급</td></tr><tr><td>시설</td><td>건축</td><td>국가유산수리기술자</td></tr></table>	직렬	직류	5급, 6급,7급, 8급, 9급	시설	건축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직렬	직류	5급, 6급,7급, 8급, 9급											
시설	건축	문화재수리기술자											
직렬	직류	5급, 6급,7급, 8급, 9급											
시설	건축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제2조(「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별표 1] <u>강사수당 기준</u>(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u>강사수당 기준</u>(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기 준	강사수당 (1시간당)	구분	기 준	강사수당 (1시간당)
A급	·중요무형문화재 및 기능 예능 보유자	90,000 원 이내	A급	· <u>중요 무형 유 산</u> -----	----- --
B급	·중요무형문화재 및 기능 예능 보유자 후보, 이수자, 전수생	80,000 원 이내	B급	· <u>중요 무형 유 산</u> ----- -----	----- --

제3조(「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매도신청) ①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u>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u> (<u>문화재</u> 매매업자의 경우) 5. · 6. (생 략) ② (생 략)	제6조(매도신청)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u> (<u>문화유산</u> -----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품의 수리·복원 등) ① (생 략) ② 군수는 박물관에서 자체적으	제11조(소장품의 수리·복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로 수리·복원 등이 불가능한
유물은 「문화재 보호법」 및
같은법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구비 서류	3. <u>문화재매매업</u> 허가증 사본 1부(<u>문화재</u> 매매업자에 한함)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

[별지 제4호서식]

구비 서류	3. <u>문화유산매매업</u> ----- ---(<u>문화유산</u> 매매업자-----)
----------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례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의 활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
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
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
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
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
산

2.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관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자연유산의 활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

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